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시행

- 1. 관련근거
  - 가. 사규관리규정 제15조(사규의 시행)
  - 나. 2016년 임금협약서 및 부대약정서
  - 다. 법무처-670호('17. 3. 9.) 『제296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』
- 2.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  - 가. 주요 개정 내용
    - 종합관제센터 4조2교대 시범실시를 위한 부서간 정원조정
      - 인재개발원, 안전지원센터 각 1명씩 감소정 → 종합관제센터 2명 증원
  - 나. 시행사규

사 규 명	시행번호	시행일	소관부서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	내규 제611호	2017. 3. 20.	기획처

- 붙 임 1. 직제규정시행내규 1부.
- 2.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

수신자 나1~나43, 다1~다52, 라1~라4

과장 도금수

처장 하성우

실장 03/20  
김병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783 (2017.03.21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037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